

원불교 출가재가 교역자 제도의 변천사

장진수(원불교사상연구원)

I. 들어가며

원불교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국내외 각계의 적지 않은 신뢰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부쩍 커진 외적 기대에 응할 만한 내적 역량에 대한 안팎의 의구심 또한 적지 않다. 교화의 정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교화에 대한 특별한 활로가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양적 성장에 대한 갈증을 호소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도 강하다. 양질의 교화를 위한 양질의 교역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교역자는 원불교의 성장의 무한 동력임과 동시에 교화 정체에 대한 무한 책임자이다. 교역자의 수준은 향후 교단 미래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역자의 발굴과 교육 훈련, 인사, 역량 개발, 처우 등에 이르기까지 교역자 제도 전반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원불교 교역자 제도의 의의, 더 나아가 원불교의 창립의 시대적 사명 및 궁극적인 목적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교역자(敎役者)’라는 용어는 일반 종교에서 통용되는 보편화된 호칭이다.¹⁾ 하지만 원불교 초기 교단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는 호칭이기도 하다. 그것이 원기 44년(1959) 1차 개정된 『원불교교헌(圓佛教敎憲)』(이하 『교헌』)에 공식적으로 등장한다. 제9조에 ‘교역자’에서 “**본교는 출가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²⁾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개정된 『교헌』들도 일관되게 교역자를 재가출가를 망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³⁾ 그러므로 원불교 교역자 제도 역시 출가교역자와 재가교역자를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막상 원불교의 출발을 보면 재가출가가 구분되기 이전에 역사가 엄연히 존재한다. 더 나아가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출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재가와 출가의 관계는 어떠한지, 원불교의 이상과 종교적 사명에 적합한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범위는 사실 매우 광범위한 것이며 연구 자체가 지

1) 장하열(연평), 「‘교무’의 개념화 과정에 관한 연구」, 제22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03. p. 80.

2) 『원불교교헌』 제1장 제3절 제9조(교역자).

3) 흔히 ‘교역자’나 ‘예비교역자’하면 출가자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교헌』의 정의를 따라 재가출가 교역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니는 종교적 함의 또한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는 기왕에 제도의 변천사를 주제로 삼았으므로 이에 충실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후의 다른 논의들의 기초를 점검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물론 제도 형성의 본의를 놓치게 되면 법규의 나열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에 원불교 교역자 제도 형성의 본의를 조금이나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어서 제도 형성 이후 변천의 역사를 쫓아가 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각되는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II. 원불교 교역자 제도 변천사

1. 교역자 제도에 대한 기본 입장

1) 교역자 제도의 형성과 변천을 살펴보기 이전에 본 회상 창립의 기본 정신을 잠시 돌아보자. 교역자 제도는 교단의 창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교역자는 창립정신으로부터 시작했고, 창립정신은 교역자를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이다. 최초 교단의 원형은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이하 대종사, 존칭은 생략함)의 대각 이후 인근 친척·친우 9인을 중심으로 한 ‘십인일단(十人一團)’에서 찾을 수 있다. 열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저축조합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묵은 갯벌에 언(堰)을 막고⁴⁾ 죽기를 각오한 기도 정성으로 법계의 인증을 받는다.⁵⁾ 이로써 양계의 인증과 음계의 인증을 함께 받아 교단의 경제적·정신적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원불교 출가자인 ‘전무출신(專務出身)’의 정신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출가자만의 정신일 수 없다. 교단 창립에 참여한 출가(전무출신)·재가(거진출진) 모두의 정신이 모두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교현』⁶⁾의 전문(前文)에도 출가뿐만 아니라 재가도 원불교의 목적을 이루는 주체임을 명시하여 ‘재가출가 전교도가 다 같이 주인’이 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전략)… 우리는 교조께서 구인제자와 더불어 저축조합을 설립하고 영산방언과 법인성사로 교

4) 방언공사: “『서약서』 우리들은 다행히 대도 대덕의 초창 시대를 당하여 외롭히 단원의 중한 책임을 맛었는 바 마음은 한 사문(師門)에 바치고 몸을 공종사에 다하여 영원한 일생을 이에 결정하였고 먼저 방언공사를 착수 하오니, 오직 여덟 몸이 한 몸이 되고 여덟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영육 고락에 진퇴를 같이 하며, 비록 천신 만고와 힘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조금도 퇴전치 아니하고 후회치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여, 종신토록 그 일심 을 변하지 안키로써 험실 서약하오니. …(중략)- 만일 배신 행동을 자행한 자로는 일체 죄벌을 감수하겠으며, 또는 조금도 여한이 없겠기로 자(茲)에 서명 날인 함.” 정산, 「제11장 방언역사와 회실건축」, 『불법연구회창간사』, 『회보』 제42호, 『원불교자료총서』 제VII권.

5) 법인성사: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 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 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대종경』, 서품13장;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 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 만고와 힘지 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 애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 할 것인 즉, 그 끌림 없는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대종경』, 서품14장.

6) 원기 33(1948). 4. 26 제정, 원기 44. 4. 25 1차 개정, 원기 49. 4. 29 2차개정, 원기 62. 3. 01 3차개정, 원기 72. 11. 15 4차개정, 원기 84(1999). 11. 08 5차 개정을 함.

단창립의 기본을 다져준 정신을 이어받아 교화·교육·자선의 삼대사업을 계승 발전시켜 제생의세의 사명 완수에 매진한다. 이에 재가출가 전교도가 다 같이 주인이 되어 일원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공화제도의 체제와 십인일단의 교화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후략)…”

제9조 「교역자(敎役者)」 항에서도 “본교는 출가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 재가출가 남녀 교역자의 양성 및 교화·사업의 담당을 명시하고 있다.⁷⁾ 제15조 「재가출가」 항에서는 “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라고 하여 공부와 사업 및 그 자격과 대우에 있어 근본적인 차별을 두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원불교는 그 출발에서부터 재가출가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엄밀히 말한다면 재가, 일상생활, 상시(常時)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태산은 재래 조선불교와 비교하여 그 혁신의 방향을 밝히고 있다. 원기 12년(1927)에 초안된 『조선불교혁신론(朝鮮佛教革新論)』의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밝힌 다음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래 조선불교는 배척을 받을 때에 소수인의 종교로서 세간을 버리고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위하야 교리와 제도가 조직되약음으로 세간 생활하는 속인에게 잊어서는 몯은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고 반대같이 되약으며 또는 세간 생활하는 속인의 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관적임으로 그 중에서 특수한 사업과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이 있다면 이어니와 그렇지 아니하고 보통 신자에 잊어서는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와 같이 부처님의 직통 제자로나 불가의 조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웁게 되였으니 어찌 그 교리 그 제도로써 대중화가 되리요 또는 이상에 말한 출세간을 본위한 교리와 제도가 세간 생활에 맞지 않는 내역을 대강 들어 말하자면 교(敎)라 하난 것은 사람을 가르치난 것인대 인간이 없는 곳에다 교당을 두웠으니 세간 생활에 분망한 그 사람들로 어느 여가에 인간을 벗어나서 그 교(敎)를 받을 것이며 의식(衣食) 생활에 잊어서도 사농공상의 원(原)직업을 놓아버리고 불공이나 시주나 동령으로써 생활을 하였으니 어찌 대중이 다- 할 생활이며 또는 결혼 생활에 들어가서도 출세간 공부하는 사람에게 잊어서는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되였으니 그 생활이 또한 넓읍지 못하다 할 것이며 교리로 말하여도 세간 생활하는 교리가 구체적으로 되들 못하였으니 어찌 그 법이 넓읍다 할 것인가?⁸⁾

재래 조선불교가 출세간의 승려 본위로 조직되어 그 교리와 제도가 세간생활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 그 대안으로 세간과 출세간을 병행하고 시대와 인심에 맞는 교리와 제도를 혁신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어찌하여야 할 것이냐? 하면 ①세간 공부하는 사람이나 출세간 공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급만 딸을 것이며 ②계통(繼統)하는 대에도 차별이 없이 직통

7) 이에 제4절 교정원 제69조 「교역자대회」의 규정이 있어 “교단적 사업에 대한 재가출가 전 교도의 의지를 결집하고 신앙, 수행, 교화, 봉공의 정신을 양양하기 위한 행사를 갖는다.” 「교역자대회규정」(원기 84. 12. 9 제정(교규 제140호).

8) 『조선불교혁신론』, 불교시보사, 1935(원기 20), pp. 17-19.

(直統)으로 할 것이며, ③수도하는 처소도 신자를 따라서 어느 곳이든지 건설하여야 할 것이며, ④의식 생활에 들어가서도 각자의 처지를 따라서 하게 할 것이며 ⑤결혼 생활에 들어가서도 자의에 맷길 것이며 ⑥재가출가를 하는 것도 특수한 서원은 말할 것이 없으나 정식(正式)에 들어가서 유년기에는 문학을 배우게 하고 장년기에 있어서는 도학을 배우며 제도 사업에 노력케 하고, 육십이 넘어서는 경치 좋은 산중 사원에 들어가서 세간의 애착 탐착을 다 예이고 생사대사(生死大事)를 연마하며 불한불열(不寒不熱)한 춘추 6개월이 되고 보면 세간 교당을 순회해야 몯은 신자로 하여금 선도(善道)에 나아가도록 하며 동하 6개월이 되고 보면 출입을 중지하고 산중 생활에 들어가서 물소리 새소리 자연의 풍악을 둘러놓고 이루삼 도리(道理)와 나무아미타불로 벗을 삼아 여년(餘年)을 맛치고 보면 일생(一生) 생활에 결합된 점이 없을 것이며 또는 ⑦세간 출세간을 물론하고 대중화하기로 하니 교리에 들어가서도 견성양성만 주체로 할 것이 아니라 솔성을 가하여 삼대강령(三
大綱領)을 주체로 하여야 할 것임으로 출세간 공부하는 공부의 요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세간 생활하는 인생의 요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세간 출세간을 물론하고 공부에 대한 훈련의 과목을 만드려야 할 것이며 ⑧기관에 들어가서도 시대와 인심을 따라서 이 교리 이 제도를 운전하는데 결합됨이 업도록 조직하여야 할 것이니 우리 일반 신자는 이에 노력하기 바라는 바이다.⁹⁾

비록 장황하지만 원불교 교역자 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세간과 세간을 두루 완전하게 하자는 데 기본 취지가 있다. 그 안에서 재가를 출가와 차별하지 않는 것을 기본 골자로 시대와 인심에 맞게 교리와 제도를 혁신하고 있다. 이 상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재래 조선불교의 교리와 제도의 혁신 방향

교리와 제도	재래 조선불교	혁신 방향
기본 방향	소수인의 불교	대중의 불교
본위와 주체	출세간 승려를 본위하여 세간 생활하는 속인은 신자라 할지라도 주체가 되지 못함	세간 공부하는 사람이나 출세간 공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급만 따를 것
계통	보통 신자는 직통 제자나 불가의 조상이 되기 어려움	(세간출세간) 차별없이 직통으로 할 것
교당 (수도처)	인간이 없는 곳에 둠	신자를 따라서 어느 곳이든지 건설할 것
의식 생활	사농공상의 원(原)직업을 버리고 불공·시주·동령으로 생활함	각자의 처지를 따라서 하게 할 것
결혼 생활	출세간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자의(自意)에 맷길 것

9) 『조선불교혁신론』, pp. 19-21. 이후 같은 취지의 글이 『불교정전』 제1편 「개선론」을 거쳐 현재 『대종경』 서 품 18장에 거의 그대로 실려 있다. 한편 『근행법』의 경우에도 「불교 대중화의 대요(大要)」에서 이러한 취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 “1. 도량(道場)은 신자의 집중지에 치(置)하고 일상생활에 접근케 함. 2. 불조정전(佛祖正傳)의 심인을 체(體)로 하고, 계정혜(戒定慧) 삼학으로써 훈련의 요도를 정함. 3. 교과서로 사용하는 경전은 평이한 문자와 통속어로써 편찬함. 4. 불제자의 계통에 있어서 재가출가의 차별이 없이 그 지행(知行)의 고하에 따라 정함. 5. 영혼 제도만을 주로 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요도를 더 밝혀서 영육을 쌍진하게 함. 6. 절식 시주 동령 음식불공 등을 폐지하고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교회에 노력함. 7. 결혼은 법으로써 구속하지 아니하고 자유로 함. 8. 여자 포교사를 양성하여 여자는 여자가 가르치게 함. 9. 재래의 의식과 예법을 사실과 간편을 주로 하여 현대생활에 맞도록 함” 『불법연구회근행법』, 불교시보사, 1943(원기 28), pp. 4-5.

	로 하지 못하게 되었음	
수도인의 일생 (3기)	-	재가출가를 하는 것도 특수한 서원은 말할 것도 없으나 정식으로 유년기에는 문학을 배우고 장년기에는 도학을 배우고 제도 사업하며 노년기에는 춘추로 세간 교당 순회하고 동하 산중 생활에 들어가 여년을 마치도록 할 것
교리	세간 생활하는 교리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못함	견성·양성뿐만 아니라 솔성을 가하여 삼대강령을 주체로 할 것이므로 출세간 공부하는 공부의 요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세간 생활하는 인생의 요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세간 출세간을 막론하고 훈련의 과목을 만들어야 할 것
기관	-	시대와 인심을 따라서 이 교리 이 제도를 운전하는데 결합됨이 없도록 조직할 것

원불교의 교리와 제도를 제정하게 된 본의가 바로 출가 위주의 ‘소수인의 불교’에서 재가 출가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포함하는 ‘대중의 불교’로 나아가자는 데 있음이 너무도 명백하다.

3) 대종사의 본의에서 보면 기존의 불가에서 주로 쓰던 출가·재가의 개념에 많은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통 불교는 출가인 비구·비구니와 재가인 우바이·우바새를 통칭하는 ‘사부대중(四部大衆)’이 있다. 교단(승가)의 출발도 출가 위주로 시작된다. 반면에 원불교의 경우 재가·출가의 구분이 없이 교단의 근간이 형성이 된다.

원불교의 출가자를 보통 ‘전무출신(專務出身)’이라 한다.¹⁰⁾ 원불교 전무출신의 경우 과거 전통 불교의 출가자와 달리 결혼을 자의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창립초기부터 기혼 전무출신(흔히 숙남·숙녀)이 많은 활동을 해왔다. 여기에 의식 생활을 각자의 처지에 따라 사농공상의 원(原) 직업을 권장하여 자력생활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직종(職種)의 차이에 따른 급여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로 결혼에 따른 사가 생활의 문제, 생활지원의 문제, 공동생활의 문제 등이 함께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다양한 교역자 제도 검토는 별도의 연구 과제이므로 여기서 언급할 건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는 기존의 출가·재가에 대한 이 해방식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난제임에 틀림없다.

이상에서 원불교 교역자 분류에서 출가 영역이 세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제도가 다소 복잡하게 변천되어 왔다. 사안별로 분류해보면 크게 아래와 같다.

첫째는 결혼 유무에 따른 구분이다.

현재 정녀·정남과 숙녀·숙남의 구분이다¹¹⁾. 숙녀의 경우 초창기에 그 문호가 열려 있었으

10) 현 「전무출신규정」을 보면 제2조(정의)에서 “전무출신이란 출가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공헌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11) 정남·정녀의 경우 원기 12년 「유공인 대우법」에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찍부터 교단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

나 이 부분이 현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출가한 여성교역자의 경우는 일부 봉공직(덕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녀에 속하게 된다.

둘째는 직종 유무에 따른 구분이다.

이것은 현재 품과 제도를 통해서 교화직(교무), 기능직(도무), 봉공직(덕무)의 구분을 두고 있다.¹²⁾ 이미 교단 내에 다양한 기관이 설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출가자가 교단 외의 기관에서 활동¹³⁾하고 있다.

셋째는 급여에 따른 구분이다. 전무출신은 공동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¹⁴⁾ 하지만 사가 생활에 대한 책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문제가 따른다. 대부분 현재 기혼 남자 교무의 문제이지만 미혼인 정남·정녀의 경우도 사가의 책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찍부터 문제가 되어 왔다.¹⁵⁾ 이에 급여에 따른 3종의 구분이 있다.¹⁶⁾

이상의 문제들은 주로 출가자의 경우에 제기되는 문제이다. 여기서 재가교역자의 영역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의 문제¹⁷⁾가 별도로 제기된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재가교역자의 참여에 따른 구분이 있다. 현재 원무를 비롯하여 교도회장, 부회장, 주무, 순교, 단장, 중앙 등의 분류가 있다.¹⁸⁾

여기에는 세대전무출신의 문제, 정토회원의 교역 참여의 문제,¹⁹⁾ 기혼 여자전무출신의 활동

인다. 하지만 그것이 정식 법규 상에 등장하는 것은 3차 개정된 『교헌』에 처음 등장한다. 이외에 「정남·정녀 규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12) 「전무출신규정」 제6조(품과)에 보면 “①전무출신 제도에 다음과 같은 품과를 두어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교단에 공헌하게 한다.”고 하고 교무·도무·덕무의 품과를 나누고 있다. 교무는 “교화에 전무하는 자, 다만 중앙총부·교구사무국·교역자 양성기관의 교원 및 중요기관 약간의 행정직에 근무”할 수 있고, 도무는 “교육·행정·자선·연구·기술·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전무하는 자”이며, 덕무는 “근로와 기능 등의 분야에서 전무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제6조의 2(품과전환)에서 원의회 결의를 얻어 품과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3) 「전무출신규정」 제18조(근무처)에 “전무출신은 교단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단의 발전상 필요할 때에는 원의회 결의를 얻어 교단 이외의 기관 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다.(개정 94.7.14)”라고 한다.
- 14) 「전무출신규정」 제24조(생활의무)에서 “전무출신은 정신일체와 생활일체를 위하여 당해 기관·교당에서 공동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범이 정한 바에 따라 사가생활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공동 생활의 문제는 초기 불법연구회 당시의 공동생활에서 유래한 것이다. 당시는 영광 등으로부터 전무출신하여 온 이들도 있었지만 출가재가가 함께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 15) 「전무출신규정」을 보면 제4장 사가와의 관계에서 ‘사가의 책임’(제28조)에 대하여 “전무출신은 가정사를 전 무출신 승낙인이나 배우자 기타 가족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 16) 「전무출신규정」 제32조의2(급여의 형태에 따른 구별)에 3가지 구분을 두고 있다. “1. 용금만 받는 자, 2. 용 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3. 급료를 받는 자(신설 79. 1. 31)”로 되어 있으며, 정남·정녀는 1호를 원칙(신 설 85. 12. 12)으로 하고 있다.
- 17) 이 부분은 불교 혁신의 정신에도 부합된 것이지만 실제로 교화의 문제가 교단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이후 출가교역자의 일부 한계가 노정되면서 떠오른 과제라 할 수 있다. 그 한계라 한 것은 출가교역자의 인원 감소, 다양한 교화 영역에 대한 전문 인력의 부족 등에 따른 교화의 오랜 정체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18) 한편 「전무출신규정」의 제7장 보칙에서 ‘특별봉사’(45조)에 대한 조항을 두어 재가교도의 기간제 전무출신으로 참여의 문호가 열려 있다. “①신심과 공심이 투철한 재가교도로서 일정기간 전무출신에 준하는 봉사를 원 할 때에는 교정원장의 승인으로 교직에 근무할 수 있다. ②그에 따르는 쳐우는 용금 지급과 시상에 한한다. ③6년 이상 근무 중 열반한 자로 그 공적이 우수한 자는 수위단회의 승인을 받아 전무출신으로 추인할 수 있다.”
- 19) 전무출신의 배우자를 ‘정토회원’이라 한다. 협행 「전무출신규정」을 보면 제4장 사가와의 관계에서 ‘가족대 종’(29조)에 대하여 “①전무출신이 교직수행의 필요에 따라 가족을 도량 안에 대동할 수 있다. 다만 교정원장 또는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동한 가족은 당해 교당·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별도의 직업을 경영하지 못한다. ③대동한 가족이 당해 교당과 기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급료를 주거나 또는 시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남자 전무출신의 협조자로서 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대전무출신의 문제는 협조자가 아니라 대등한 도반의 입장에서 교역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되므로 이는 또 다른 차

영역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상을 따라 원불교 교역자의 분류표를 작성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2〉 원불교 교역자의 분류

재가출가	결혼유무	품과별	급여구분	직무분담(임원)
출가 (전무출신)	정녀	교무	1. 2. 3.	
		도무	1. 2. 3.	
		덕무	1. 2. 3.	
	정남	교무	1. 2. 3.	
		도무	1. 2. 3.	
		덕무	1. 2. 3.	
	숙녀	-		
		-		
		덕무	1. 2. 3.	
	숙남	교무	1. 2. 3.	
		도무	1. 2. 3.	
		덕무	1. 2. 3.	
재가	남	원무	-	
				교도회장 등 ²⁰⁾
	녀	원무	-	
				교도회장 등

크게 앞의 4가지 문제로 인하여 교역자 제도가 다소 복잡하게 전개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출가와 재가의 순으로 각각 제도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자 한다.

2. 출가교역자 제도의 형성과 변천 과정

1) 앞서 밝혔듯이 원불교 출가교역자는 모두 ‘전무출신’으로 통칭된다. 품과가 나뉘기 이전 원불교 출가자는 모두 ‘교무’라 하였다. 그러므로 한동안 출가=전무출신=교무라는 의식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은 그 출발에 있어서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었다.

먼저 초기에는 출가재가의 구분이 없었다. 대종사 당시 영산 저축조합이나 익산 불법연구회의 경우는 조합원과 회원 모두의 공동체였다. 첫 구인 단원의 경우도 후일에 일부는 출가하고 일부는 재가하고 있다.

변산에 주석할 때 많은 이들이 그 시봉에 참여하고 있다. 『불법연구회창건사』(이하 『창건

원의 문제가 된다. 이는 현재 여자 전무출신의 결혼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는 출가재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출가 내에 품과 구분에서 오는 문제보다도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정녀와 숙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교단의 창립의 역사 속에서 정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여자교무의 결혼에 대한 선택의 문호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문제는 정서적으로 쉽게 극복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교단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교단 구성원들의 정신적·경제적 성숙이 함께 요구되는 문제로 단계적인 개선해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20) “제3조(종별) 재가교역자는 재가교도로서 원무와 교도회장, 부회장, 주무, 단장, 중앙, 순교 등의 종별을 둔다.” 「재가교역자인사임면규정」, 원기 80. 4. 30(교규 제110호).

사』에 보면 원기 7년(1922)에서 8년(1923) 사이 봉래회상(蓬萊會上) 당시 유공 성적을 고시하면서 ‘전무노력자(專務勞力者)’의 명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범현동에 목조초집(현재의 영산원) 건축에 합력한 이들은 ‘전무주력자(專務主力者)’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다.²¹⁾ 한편 원기 9년(1924) 총부회관 건축 당시 유공인을 고시할 때도 ‘전무노력자(專務勞力者)’의 명단을 밝히고 있다.²²⁾ 이들은 ‘전무출신(專務出身)’이란 호칭이 공식화되기 전 단계 표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원기 7년에서 8년에 사용된 ‘전무노력자’ 혹은 ‘전무주력자’의 명단을 살펴보면 이들은 당시 출가자를 명명한 것도 아니요, 후일의 출가한 자만을 그렇게 명명한 것도 아니다. 거기에는 재가자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다.²³⁾ ‘전무(專務)’라는 말 그대로 ‘오롯이 힘쓴’ 모두에게 그러한 공로를 인정하고자 쓴 표현이다.

‘전무출신’의 명칭을 출가 중심의 신분상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원기 9년(1924) 익산 총부 건설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새 회상 공개와 함께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을 ‘전무출신’으로 호명하면서 부터이다. 『창건사』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원기 12년(1927) 1월에 발표된 「유공인대우법(有功人待遇法)」에 ‘정남·정녀’와 ‘전무출신’이란 명칭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²⁴⁾ 하지만 원기 12년(1927)의 『불법연구회규약』(이하 『규약』)에는 ‘출

21) 자(自) 시창 7년(임술) 지(至) 8년(계해). “…(전략)… 대종사께서 일찍이 하산을 뜻하신 후로 봉래 회상에 관한 모든 문서를 정돈하사, 그 유공 성적을 고사(考査)한 바 있었으니 그 씨명은 아래와 같다. ○전무노력자(專務勞力者) : 김남천, 송적벽, 김혜월, 이청풍, 송도성, 오창건, 송규 ○후원자 : 김광선, 이만갑, 구남수, 김기천, 문정규, 이춘풍, 서중안, 이일근, 송월수, 장적조, 이대련화, 최도화, 김동순, 박호장, 강일생화, 김정각, 장정수, 홍청송월, 이강련화, 박원석 …(전략)… 드디어 범현동 전록(前麓)에다가 기지를 정하시고, 8월에 건축 공사에 착수하여 목조초집(木造草葺) 10간 1동, 8간 2동을 동년 10월에 이르러 필역하니 건축에 동력(同力) 한 씨명은 아래와 같다. ○전무주력자(專務主力者) : 오창건, 김기천, 이재철, 송규, 박세철, 이동안, 송도성, 이춘풍, 송적벽, 김월봉, 김광선, 김남천 ○후원자 : 서중안, 서동풍, 송벽조, 이완철, 서기체, 유건, 이순순, 김명량, 김홍철, 문정규, 유기만, 신정권, 김영철, 김순천, 양하운, 김화옥, 이대련화, 장적조, 이강련화, 이만수월, 정청강월, 강일생화, 이일근, 전삼삼이었고 그외에도 2, 3 동리에 촌인의 조력도 있었다. 송규, 『불법연구회창건사』, 『회보』 제44호, pp. 25-28.

22) “시창 9년 갑자. …(중략)… 회관 공사를 필역한 후 당시 건축에 대한 유공 인원을 조사하니 그 씨명은 아래와 같다. (1) 전무노력자(專務勞力者) : 김광선 오창건 이동안 이준경 송규 송도성 전음광 송만경 문정규 김남천 송적벽 조갑종 (1) 특별 후원자 : 서중안 서동풍 이청준 이동진화 이공주 전삼삼 최도화 박원석 박사시화 장적조 등이요” 『창건사』, 『회보』 제46호, pp. 54-58. 당시 전무출신은 영광 익산을 통하여 김광선 오창건 이동안 이준경 송규 송도성 전음광 송만경 문정규 김남천 송적벽 조갑종에 이원화를 포함하여 13명이다. 『교사』, 『원불교전서』, p. 1068, p. 1159.

23) 실제로 『창건사』에 제27장 제1회 기념총회(시창 13년) 기사를 보면, “10년 이상 전무출신자, 5년이상 전무출신자, 재가회원 중 1등 전무주력자(專務主力者), 재가회원 중 2등 전무주력자” 등의 표현이 나온다. 『회보』 제49호, pp. 42-44. 이 『회보』 49호가 쓰인 것이 1938년이므로 이전의 표현을 후대에도 그대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무(專務)’라는 용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당연히 출가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4) 제25장 유공인 대우법의 발표(시창 12년 정묘) 기사를 보면, “1월에 대종사께서 본회 유공인 대우법을 발표하시니 그 유공 종별은 1. 정남 정녀로써 본회를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2. 전무출신으로써 본회를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3. 재가 회원으로써 본회를 위하여 많은 공적이 있는 자, 4. 법강항마부 이상에 승급한 자녀를 회사하여 회사위에 해당한 자.” 『창건사』, 『회보』 제49호, pp. 35-36. 이 기사가 후대에 실린 것이므로 원기 12년 당시에 정남·정녀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여성 전무출신제도가 제안된 것은 원기 14년(1929) 이청준에 의해서이다. 이후에 비로소 여성전무출신의 총부 공동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전무출신으로 정녀 1호는 조전권은 원기 12년(1927)에 익산총부에 왔으나 원기 13년 동선 해제(3월 27)을 기하여 전무출신을 서원한다. 하지만 「유공인대우법」은 원기 12년 음1월에 발표된 것이므로 제도가 먼저 생긴 것이다. 이후 원기 18년(1933) 『회보』 4호에서 정남정녀제도를 제정한 취지를 밝히고 있으며, 『회보』 45호에 실린 감찰세칙 제2장 제8절에 이에 대한 규정을 밝히고 있다. 이상 자세한 논의는 민현주, 『원불교의 남녀평등사상과 실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4, pp. 85-92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가공부인’ 혹은 ‘연구인 출가규약’ 혹은 ‘출가회원’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무출신’이란 명칭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문헌 기록상 『월말통신』 창간호(원기 13년 음5월) 「제5회 전무출신실행단」 기사가 가장 빠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단규원세칙」에 따르로 5번째 전무출신실행단이 조직되었다는 기사이다. 이 시기에 이미 ‘전무출신실행단’, ‘전무출신기성단’, ‘거진출진단’ 등의 단조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기 12년(1927)에서 13년(1928)에 걸치면서 ‘전무출신’이란 호칭이 출가회원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공식화된 것으로 보인다.²⁵⁾

2) 한편 ‘출가’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신분상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쓰인다. 그 경우 이는 새롭게 정립된 ‘전무출신’의 의미와 일치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교단에서는 그 용례가 이에 한정되고 있지 않다. 여전히 『규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부의 처소’에 따른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재가공부(인)’, ‘출가공부(인)’과 같은 경우이다.²⁶⁾ 이러한 용례는 초기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 것²⁷⁾으로 원기 16년(1931)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가 그 해 겨울에 저술된 『보경육대요령』에 비로소 ‘재가’는 ‘상시(常時)’로, ‘출가’는 ‘정기(定期)’로 대치된다. 이후 재가출가의 용어는 ‘공부인의 처소’의 용례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기 17년(1932) 경에 이르러 ‘출가’라는 용어는 ‘전무출신’과 동일한 의미의 신분상의 개념으로 정착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²⁸⁾

25) ‘전무출신’은 전무+출신으로 원불교의 고유한 용어이다. ‘전무(專務)’는 말 그대로 이 회상의 창립에 “오롯이 힘쓰는”의 의미를 가진 일종의 형용사라 할 수 있다. ‘출신(出身)’은 일반적으로 ‘00 출신’처럼 ‘출생 당시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에는 ‘출세(出世)’와 동의어로 쓰이는 것이기도 하다. ‘출가(出家)’하면 일반적으로 불가의 전통에 따라 ‘세간 생활을 벗어남’을 뜻한다. 즉 가정·사회·국가·세계 등 모든 세간의 삶을 벗어나 출세간의 삶을 위주로 살아간다는 것으로 ‘재가(在家)’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로 쓰인다. 반면에 ‘출세(出世)’의 의미는 유가의 전통에서 보면 ‘세상으로 나아감’을 뜻한다. 즉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길에 나서는 것으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적극적인 현실 참여의 의미도 담겨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출신(出身)’은 위의 ‘출가’와 ‘출세’의 의미를 모두 지닌 것으로 소극적인 ‘출가’의 의미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출세’의 의미를 더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6) 『규약』 제19조.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 시에 십계문과 삼강령 팔조목과 솔성요론과 재가 응용 주의법과 출가 공부인 책임사항을 전수함.”이라고 하여 재가와 출가의 내용을 ‘신분상의 차이’가 아닌 ‘공부인의 처소(처지)’에 따라 ‘재가공부인’과 ‘출가공부인’을 구분하여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재가공부는 상시훈련으로 출가공부는 정기훈련을 말하는 것임을 규약의 내용상 알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언급된 규약의 내용은 「재가 공부인 고락(苦樂)의 설명」, 「재가 공부인 응용할 때 주의사항」, 「재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출가(出家) 공부인의 책임」 등이 있다.

27) “4. 재가 공부인에게는 재가응용 주의사항 육조로써 재가의 단련을 받게 하나 삼강령의 힘을 완전히 득치 못한 자로서는 풍진우애의 속세에 재하야 독력으로써 공부의 전로를 개척키로 하면 공부의 방식이 황폐하기 쉬움으로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난 책임’ 육가조를 제정하여 재가공부인으로서 교무부에 온 때는 반드시 교무부를 다녀간 효력이 있도록 하나니, 즉 1조로서는 …(중략)…, 4조로는 매년 양도입선(兩度入禪)의 정기훈련을 받게 하고, 5조로는 매월 삼차예회(三次例會)의 정기훈련을 받게 하며, …(중략)…, 5. 매일 일기표를 동년 7월 경에 작성하여 위에 기록한 재가응용주의사항의 실행여하와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난 책임 실행여하와 삼십계문의 범불법(犯不犯)과 본회 사업에 정신이나 육신이는 전곡으로써 근고 또는 혜시한 성적 유무와 공부방면 사업방면 생활방면에 대한 의견유무를 매일 속임 없이 조사하여 재가선(在家禪)과 출가선(出家禪)을 물론하고 일일시시로 실행케 하였으며, 또는 매월로 대조하고 매년으로 대조하여 자기성적 진축(進縮)을 알게 하였나니, 이 일기법 실행으로부터 자기가 완전히 자기를 가르치게 되었으며 재가출가를 통하여 진실한 훈련을 받게 되다.” 「교무부 제1회 공부인훈련보고서」, 『시창13년 사업보고서』.

28) 전무출신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전무출신=출가라고 한다면 출가가 가지는 기존의 인식이 매우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른 바 원불교의 출가인 ‘전무출신’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날 수 없는 점도 없지 않다

한편 『규약』에는 ‘연구인 출가 규약’을 두고 있다. 비록 2개 조항이지만 이는 출가교역자에 대한 공식적인 최초의 규정이란 점에 그 의의가 크다.

1. 연구인이 본가(本家)를 떠나 선원에 영원히 거주하기로 하면, 12개월 입선 후에 회중 공의(公議)를 얻어 출가 원서를 반기로 흄.
2. 출가 원서를 제출할 때에 출가인의 생장(生長)의 시종(始終)을 알만한 자로 보증인을 세우고, 자기 생활 방침의 사유서와 당인의 관계인 허가 증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만일 1건이라도 부족한 경우가 있고 보면 출가 원서를 반려 흄

이는 최초의 전무출신(출가)에 관한 규정으로 출가원서의 간단한 양식과 그 수속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때 출가의 의미를 ‘본가를 떠나 선원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그 자격 조건에서 ‘12개월 입선 후 회중 공의를 얻어 출가원서를 받기’로 하고 있다. ‘12개월 입선’은 3개월 정기훈련을 4차례 이수해야 하는 기간으로 동·하선을 빠지지 않고 2년간 나야 하는 셈이다.²⁹⁾

원기 19년 개정판 『규약』을 보면, 「본회의 세칙」에 들어가면 ‘정기공부’(2장)에 이어서 ‘출가’를 별도의 장으로 두고 있다. 제3장의 제15조 이하에서 출가 규정을 밝히고 있다. 1. 출가원서는 제16조에 “회원이 본가를 떠나 출가할 지원(志願)이 유(有)할 시는 교정원에 원서를 제출”하고, 2. 원서 제출 시 수속으로는 제17조에 “출가원서를 제출할 시는 소관 교무의 신분보증서 1통과 당인의 생활계획서 1통과 당인의 관계인 허가증 1통을 첨부해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³⁰⁾

3) 한편 총부 운영을 위해 책임을 맡을 임원들이 필요하게 된다. 임원 중에서 부장 및 간사 등은 출가회원 내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원기 12년 『규약』 제2장 임원에서 제9조 “평의원은 각처 회원내에 시비이해(是非利害)를 분간하며, 공의(公議) 시에 언론할 만한 자로 총회에서 선정홈. 부장 및 간사는 출가회원 내에서 선정³¹⁾하되, 공사에 전력하며 자기의 임무를 능히 처리할 만한 자로 평의원회에서 추천하여 총재와 회장이 임명홈.”으로 되어 있다. 평의원에 대한 출가재가 구분은 없으나 부장(당시 7부)과 간사의 경우는 출가회원으로 하도록 하는 신분상의 구분을 두고 있다.³²⁾

한편 원기 19년의 개정판 『규약』에서는 이를 좀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

고 본다. 원불교 전무출신은 기본적으로 사가를 떠나 몸과 마음을 공도에 헌신하기로 서원하고 공가의 생활을 위주로 하지만 그것이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결혼 유무나 직업 유무와 배치되는 의미도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전무출신’이라는 고유한 용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출가의 의미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29) 『규약』 제14조, 1927(원기 12).

30) 『규약』(재판), 1934(원기 19).

31) 이와 관련하여 「본회의 세칙」을 좀 더 살펴보면, ‘4. 임원 선거 규약’에서 “회무소(會務所)나 연구소나 임원이 대소(大小)가 있으니 중임(重任)은 법강항마부에 등록한 연구인에서 선정하고, 보통 임원은 특신부 이상과 유공안(有功案)과 시봉안(侍奉案)과 혜시안(惠施案)과 저축안(貯蓄案)에 등록한 사람으로 자격을 택취(擇取)하여 선정하기”로 하고 있다. 여기서 중임에는 부장도 속하며, 간사는 보통 임원에 속한다.

32) 『규약』 제9조, 1927(원기 12).

무’와 ‘순교무’의 명칭이 등장하는데, 임원의 일원으로 규정되고 있다. ‘제4장 임원’에 보면, 제7조에 “1. 종법사 1인, 2. 회장 1인, 3. 원장 2인, 4. 부장 10人, 5. 순교무(巡敎務) 약간 인, 6. 교무(敎務) 약간인, 7. 순교(巡敎) 약간인, 8. 간사 약간인, 9. 총대 약간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임명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부장 순교무 교무는 자기의 임무를 이행할 인물로 종법사와 회장의 인가를 득(得)하야 원장이 임명함.” 제12조에 “순교 급(及) 간사는 원장의 승인을 득(得)하야 부장이 임명함.” 제15조에 “…(전략)… 회장 원장 부장 순교무 교무의 임기는 총(總)히 3개년으로 하고 순교 급(及) 간사는 1개년으로 하되 지부 급(及) 출장소 임원의 임기도 총부 임원과 동일함.”이라고 하고 있다. 제16조에 “…(전략)… 부장 순교무 교무는 원장의 명을 승(承)하야 임무를 처리함. 순교 급(及) 간사는 부장의 명을 승(承)하야 임무를 처리함.”이라고 되어 있어 순교무, 교무 등도 부장, 순교, 간사 등과 함께 임원의 한 명칭으로 등장하고 있다. 임명관계상 서열을 살펴보면 종법사-회장-원장-(부장, 순교무, 교무)-(순교, 간사)의 순서로 되어 있다.

4) 한편 『규약』에는 임원들이 사무를 통해 공부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공부 비용의 지불 여부에 따라 2종의 종별을 둔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5. 사무인 처리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공부할 비용금이 염려 없난 사람이 공부를 하기로 한 바 사무 볼 사람이 무(無)하여 사무를 보기로 하면 부득이 형편에 의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만한 사람이 있난 후에 그 사무를 전임(傳任)하고 공부를 하되 그 사무 본 임금은 사업 성격에 기재하기로 흄.
2. 공부할 비용금이 없난 사람이 공부하기 위하여 사무를 보기로 하면 사무를 보되 그 사무 계속 할 만한 사람이 있고 그 임금이 공부 비용이 될 만한 형편을 따라 공부 비용을 회중에서 지불하면 그 사무를 전임(傳任)하고 공부하기로 흄.³³⁾

임원으로 사무를 보면서 공부 비용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회중에서는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불법연구회에는 ‘공부하기 위하여’ 온 전무출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공부 비용을 미리 준비하여 오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먼저 임원이 되어 사무를 하게 되는데, 그 사무를 보는 목적이 1차적으로 공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차적으로는 그 기간에 다른 이들이 입선하여 전문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33) 『규약』「본회의 세칙」5. 사무인처리사항, 1927(원기 12). 사실 이 내용은 『규약』의 「출가공부인의 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1. 공부할 때에 비용금이 염려 없는 사람은 매년 동하 6개월은 선원에 와서 각항 공부 진행하기를 주의할 일.
 2. 춘추 6개월은 회중사업도 대강 안보하며, 사가도 대강 안보하며, 한가한 때가 있고 보면 강산을 구경하여 정신을 소看一下며, 모-든 교회 선지식으로 죽어 의견 교환하기를 주의할 일.
 3. 공부할 때에 비용금이 없는 사람은 춘추 6개월에 비용금을 장만하여 가지고, 동하 6개월은 선원에 와서 각항 공부 진행하기를 주의 할 일.
- 단, 회중에서는 비용금이 없는 공부인의 정도를 보아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모든 일에 표준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 보면, 회중 공의(公議)를 얻어 공부하는데 곤란함이 없게 하여 주기로 함.

여기서 ‘출가공부’는 입선을 말하는 것으로 ‘출가공부인’이라 하여 반드시 전무출신자만을 얘기한 것은 물론 아니다.

당시 전무출신은 모두 무보수로 공동생활을 하였는데, 이는 모든 의식주의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입선하여 전문 공부의 훈련을 받아 회상의 공도사업에 일조 하자는 취지로 출가자에게 경제적인 자력을 갖추게 한 점과 공부와 함께 사업을 병행케 한 점은 그 자체로 영육쌍전과 이사병행의 취지에 충실한 것으로 세간공부와 출세간공부를 함께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합당한 것이다.³⁴⁾

개정판 『규약』에 그 취지를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원의 처리는 좌(左)의 2항으로 함.

1. 공부할 비용준비가 있난 자로서 전무출신하야 임원이 된 사람은 그 임무에 대한 급료를 매년 사업성적에 기재하기로 함.
2. 공부할 비용준비가 업난 자로서 전무출신하야 임원이 된 사람은 그 급료를 매년 사업성적에 기재할 시 정도에 의하여 다소간 저축하였다가 당인의 사무를 전임하고 공부할 시 지불하야 주기로 함.³⁵⁾

임원에는 출가와 재가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³⁶⁾, 임원의 처리에서 전무출신한 사람의 경우에서 2종별로 나누고 있다. ‘공부할 비용을 준비한 전무출신’이 임원이 될 경우는 급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성적으로 기재하고, ‘공부할 비용을 준비하지 못한 전무출신’이 임원이 될 경우는 급료를 저축해두었다가 공부할 때 그 비용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당시 정기와 상시의 관계, 공부계와 사업계의 관계 등을 어느 정도 살필 수 있다.³⁷⁾

5) ‘교무’라는 호칭이 개정판 『규약』 임원 규정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다. ‘교무’라는 호칭³⁸⁾은 원기 14년(1929) 2월 25일(음1월 16일) 정기 단회일에 이춘풍이 제출한 의견안에

34) 당시 ‘임원’으로 총재, 회장, 각 부장외에 ‘신분검사원, 문부검사원(文簿検査員), 재무, 서기, 빈객옹접원, 감원, 간병, 가산수찰원(家産修察員), 물품장주(物品藏主), 공양주, 물품구입원, 종두(鐘頭), 감육(監浴), 수화감임(水火監任), 회중사자(會中使者)’이 명시되어 있다. 『규약』「본회의 세칙」, 제7조, 1927, pp.33-35.

35) “선생[대종사]께서 임원처분에 관한 문제를 들어서 말씀하시되 「종전(從前) 본회 임원의 요금에 대하여는 전부 의무적으로 하여 근고안(勤告案)에 기재하였다가 창립 유공성적표에 표창하여 주었드니 차(此)와 여(如)히 하고보면 기(其) 임무를 사퇴하는 날에는 공부할 비용금이 무(無)하게 됨으로 자금(自今) 이후로는 회중과 상조부의 일반임원의 요금을 현금으로써 상조부에 저축하였다가 사임시 공부 비용으로 증급(贈給)함이 가(可) 할 듯 하다」함에 만장일치로 찬동하여 가결하고 …(후략)….” 「제6회 평의원회회록」(원기 13. 3. 16) 이 임원의 요금 문제 역시 공부할 비용금이 유무에 그 핵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평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일반 임원의 요금을 현금으로 상조부에 저축하였다가 이후 공부비용으로 증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임원을 선출 할 때도 유급 임원, 무급 임원을 구분하고 있다.

36) 개정판 『규약』 ‘제6장 상무회의’에서는 4종의 회의(每夜公事會, 정기임원회, 임시임원회, 임원총대회)에서 매일 저녁 공사회의에서 “출장임원과 재가입원이 서로 처리한 일을 보고 또는 토의”한다고 하여 ‘재가입원’에 대한 언급이 있어 임원에 출가 외에 재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이공주의 「정기전문훈련성적표」(제68호)를 보면, 원기 17년 이후 매년 동선(冬禪)의 성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원기 19, 20, 21년의 경우는 근태(勤怠)성적에 ‘임원(任員) 사무(事務)’라고 적고 있다. 이때 이공주는 정식 출가한 이후로 출가자로서 동선기간 동안 임원 사무를 보고 있는 한 사례라 하겠다.

38) 이하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장하열(연광), ‘‘교무’의 개념화 과정에 관한 연구’, 제22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 2003에서 정리한 바 있어 이를 주로 참고하였다. 장하열은 이 의견안 결의의 의미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폐기하고 불법연구회라는 종교집단의 특성에 맞는 칭호를 일관성 있게 호칭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결의의 배경에 “불법연구회의 성장 시기에 종교집단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호칭의 정비와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하여 공식화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당시 이춘풍이 상정한 안건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관 남녀선원의 교무(教務)와 지부 급(及) 출장소의 교무에 향하야 그 아래 상종하난 회원으로부터 혹 선생님이라고 칭호하난 언사가 있난 바 칭호하는 회원으로서는 아모쪼록 남을 존대하려는 조흔 생각으로 하난 바이지마는 당하난 사람의 처지에 있어서 난 실로 미안한 점이 만사오며 혹 참된 소견이 업난 자난 자존심이 맹장(萌長)할 우려도 없지 아니한 즉 차(此) 언사를 규칙적으로 폐기하고 서로 그- 법명을 호칭하든가 법호가잇스면 법호를 칭호하든지 그릇치 아니하면 「교무(教務)」라고 칭호하난 것이 올흘 줄로 생각합니다.」 우안(右案)에 대하여 일반이 찬성하고 종사주께옵서도 허가하셨으며 「갑(甲)」으로 감정았다.³⁹⁾

여기서 ‘교무’라 호명할 것을 제기한 이춘풍의 본의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혹 ‘참된 소견이 없는 자’에게 오히려 자존심의 짹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이다. 이춘풍은 당시 이미 선원에서 훈련을 지도하는 ‘교무’였다. 앞서 ‘교무’가 임원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교무’는 본관이나 지부·출장소에서 남녀선원을 지도하는 임원에게 붙여진 호칭이며 당시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⁴⁰⁾

그 명칭의 유래가 불법연구회 초기 7부 중 중심부서인 ‘교무부’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진 않는다. 『규약』에 따르면 당시 교무부의 직무는 “본회의 취지·규약·경전을 가르쳐 연습시키며, 동하 6개월에 공부인의 일기를 감정(勘定)하며, 연설과 산술을 가르치며, 필요한 역사를 강습(講習)하기” 등이다. 이는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의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교무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부서이고 그 역할을 주로 맡은 임원을 자연스럽게 ‘교무’로 호칭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판 『규약』에서도 “교무부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장려감독하며 법설 역사 교과서와 각종 예문을 편집하고 회원입회 수속과 특별 통상회원 명부 급(及) 단명부와 일체도서를 관리하며 공부의 승강급 각종 예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훈련 외에 훈련과 관련된 자료 편집과 회원입회 및 공부 정도에 따른 명부관리 및 승강급 예식 등 훈련과 고시와 법위(당시 학위등급) 관계 업무를 주로 담당한 부서라 할 수 있다.

‘교무’라는 호칭의 유래가 이처럼 ‘교무부’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 속에 생겨난 것으로 이것이 처음부터 출가자를 지칭하는 호칭이었거나 혹은 원불교 성직자의 주된 호칭을 의식한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⁴¹⁾ 오히려부장과 간사를 출가 회원에서 선정하게 된 이후, 임원은 주로 출가회원이 담당하여 온 것으로 당시 교무부(지부·출장소 포함)의 직무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적절한 호칭이 필요하여 ‘교무’(혹은 ‘순교무’)로 부르게 되었을 것이다.⁴²⁾ 이

39) 『월말통신』제11호(원기 14년 음1월).

40) “영광교무 송도군(규) 경성교무 이원영(춘풍)”을 선임함. 「제6회 평의원회회록」, 원기 13(1928). 3. 26; “담임교무난 송만경씨로 되다”라고 하고 있다. 『월말통신』2호, 원기 13(1928). 6월.

41) 장연광의 앞의 글에서 “이때부터 ‘교무’라는 개념은 원불교 교역자의 권위와 성직을 상징하는 전문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후대의 해석일 뿐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어떠한 권위가 원불교 교역자를 상징하는 전문용어를 의식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42) 「제2회 정기총회회록」(원기 14년 3월 28일)에서 결의건 토의에서 ‘순회교무(巡廻教務) 선임에 관한 건’이 논

것은 이춘풍의 제안과 상관없는 일이다. 이후 순회교무, 교무 등의 임원을 정식으로 선출 임명하고 있다.⁴³⁾ 그러다가 원기 19년 개정판 『규약』에는 ‘순교무’와 ‘교무’가 임원의 한 직함으로 공식 포함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교무’는 ‘교무부’의 직무를 중심으로 교육과 훈련, 법회 등 각종 예식 등을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부르는 호칭이며, 이것이 출가자의 통칭이 되고 원불교 교역자의 대명사로 자리하게 된 것으로 후대의 일로 봐야 할 것이다.⁴⁴⁾ 다만 어디까지나 본관의 남녀 선원이나 지방의 지부·출장소 교역에 임하는 자에게는 ‘교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무’라는 호칭에 대한 이견이 없지 않았다.⁴⁵⁾ 원기 49년(1964)에는 「교무자격규정」이 제정되어 1급에서 5급까지 교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⁴⁶⁾ 하지만 원기 27년(1942)에 제정된 『회규』에서 ‘포교사’라는 호칭이 이후 한동안 사용되고 이후 ‘교역자’라는 용어로 대치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원기 47년(1961) 제14회 임시수위단회에서 「포교사자격고시규정」 등을 심의한 후 법제위원회를 거쳐 수위단회에서 재심의하여 통과키로 결의하고 있다. 원기 47년(1962) 제20회 임시수위단회에서 포교사 자격검정 및 전형고시 실시의 건을 만장일치로 찬동 가결하고 원기 48년도부터 시행키로 결의하고 있다. 그러다가 원기 49년(1964) 제24회 정기수위단회에서 「교역자고시규정」과 「교역자자격규정」 등이 통과되고 비로소 원기 50년(1965)에는 ‘제1회 교역자자격검정고시’를 실시하여 교무의 자격을 정식을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원기 61년(1976) 11월 2일에 실시한 제71회 임시 수위단회에서 “교역자 호칭을 교무로 결의”하고 있다.⁴⁷⁾

의되고 있는데, “순회교무선생(巡廻敎務先生)님의 건에 들어가 최도화씨의 특청에 이형국씨의 재청이 있어 순회교무 선임의 건은 만장일치 찬동으로 가결하고 순회구성(巡廻區城) 급(及) 교무(敎務) 출장요금(出張料金) 분담의 상칙은 차회 임원회에서 감정기로 하다.”라고 하여 순회교무, 즉 순교무 제도를 도입하면서 ‘순회교무 선생님’이라 하여 ‘교무 선생님’이란 호칭도 혼용해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대종사에 대한 호칭도 ‘총재 선생님’이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도 이춘풍의 의견에 따라 ‘을’의 감정을 받아 ‘종사주(宗師主)’라 호칭하게 된다. 『월말통신』 제11호(원기 14. 음1월).

43) 「제9회 평의회회록」(원기 17년 3월 27일)에서 “1. 당일 선거된 임원 제씨 ① 총부(유급임원) 총무 전음광(신임) 서무부장 오창건(재임) 서무부서기 김대거(재임) 교무부장 송도성(신임) 교무부서기 송혜환(신임) 상조부서기 서대원(재임) 감원 이재문(신임) 공양원 이칠성(재임) ② 영광지부(유급임원) 지부장겸 교무 송규(신임) 서무부장 조갑종(신임) 상조부서기 조갑종 상조부장 이동안 아동교무(兒童敎務)겸 서무서기(이건양) 공양원 이원화 이도수 ③ (무급임원) 경성지부 교무 이공주 진안출장소 교무 김광선 영광신풍분회 주무 이형국 김제출장소 교무 박대완 선시(禪時) 교무 김기천 순회교무(巡回敎務) 김영신 조전권. 계 유급임원 14인 무급임원 7인 합 21인”이라 하고 있듯이 임원 선거를 통해 교무(아동교무), 혹은 순회교무, 주무 등을 임명하고 있다. 총부와 영산지부의 경우 유급임원으로 뽑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이 당시 이공주는 출가 이전의 재가임에도 원기 15년 평의회에서 경성교무로 선임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44) 당시 출가교역자는 ‘전무출신’으로 통칭되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출자자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전무출신은 호칭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교회현장에서 교도나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요구된 것으로 이후 그 자리를 ‘교무’라는 호칭이 차지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5) 원기 41년(1956) 1월 28일 개최한 제3회 교정위원회에서는 “교헌개정에 관한 건은 교당, 교무 등의 명칭에 대한 이견이 있어 차후 개정 때 결정기로 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원불교72년총람』, 원불교 창립제2대 및 대종사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 1991, p. 213.

46) 「교무자격규정」 제4조, 원기 49. 4. 6 제정(교규 제6호)

47) 『원불교72년총람』, 1991, p. 175.

원기 71년(1986)부터 「교무회의(敎務會議)」에 대한 규정이 있어 15년 동안 유지해오다가 원기 85년(2000) 교현 개정 당시 폐기하고 그 대신 「출가교화단」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출가교화단은 본교 출가교도를 이단치교의 이념 아래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공부사업의 촉진과 대중교화로 일원세계 건설에 유능한 조직이 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6) 원기 27년(1942)에 발행된 『불법연구회회규』(이하 『회규』)에도 제5장 회원에서 제2절 출가회원을 규정하고 있다. “출가회원을 전무출신자라 칭”⁴⁸⁾하고, “전무출신은 정신, 육신 양방면으로 오로지 본회를 창립키 위하여 출가한 자”⁴⁹⁾로 한다고 되어 있어 앞의 『규약』의 취지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회규』에서는 전무출신의 기한과 종별을 나누고 있어 전무출신 내의 분류를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이는 기준의 전무출신의 실행단과 기성단의 2가지 분류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회규』에서는 전무출신자를 ‘정식 전무출신자, 훈련 전무출신자, 예비 전무출신자, 기성 전무출신자’의 4가지로 나누고 있다.⁵⁰⁾ 그리고 다시 “정식 전무출신자는 그 의무이행 성적의 우열을 따라 1종으로부터 5종까지 등급”을 두고 있다.⁵¹⁾

이는 앞서 임원의 공부 비용의 마련의 문제에 따라 2종으로 나눈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회상 창립이 20여년이 넘어가면서 전무출신의 기한 오래된 자가 생기게 되므로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했을 것이며, 또한 전무출신 지원자가 꾸준히 늘어감에 따라 예비교육 과정에서의 차등을 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정식전무출신자의 종별은 그 의무이행 성적의 우열에 따른 것으로 후대에 잠시 제도화되었던 ‘연한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제2항 수속에서 전무출신의 지원 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자격에 있어 학력에서 초등 학교 이상 혹은 순한문의 문리를 통한 자로 하여 연령도 15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⁵²⁾ 이는 구체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신심과 서원, 그리고 보증인의 추천 등을 위주로 보지만 학력이나 악행 여부, 장애 및 전염병, 그리고 연령 등의 제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제4항 ‘전무출신 권장자’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등장한다. 전무출신을 권장하기 위하여 그 사가의 일을 담당한 자를 전무출신 권장자로 대우해야 그 공로를 표창하는 제도⁵³⁾로 전무출신자의 희망에 의하여 정⁵⁴⁾한다. 『회규』에서는 이를 “3종으로 구별하야 앞의 제139조를 완전 실행케 한 자를 1종, 혹 소소한 구애는 있을지라도 큰 구애를 주지 않는 자는 2종, 크게 구애될 일만 보아주는 자는 3종”⁵⁵⁾으로 하고 있다.

48) 『회규』, 제128조.

49) 『회규』, 제129조.

50) 『회규』, 제130조.

51) 이는 다음의 5가지 조항에 이행여부에 달려 있다.

1. 사가의 구속이 없이 그 임무를 전일 이행하는 자.
2. 임무 이행의 취지가 급료를 받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의무감으로써 실행한 자.
3. 본회 명령에는 호오(好惡)를 불택(不擇)하여 항상 그 지정 임무에 노력하는 자.
4. 정신과 힘을 다하여 본회 외는 달리 마음이 흐르지 아니한 자.
5. 공부 사업 양방면으로 공덕이 항상 들어나는 자. 『회규』, 제139조.

52) 『회규』, 제144조.

53) 『회규』, 제150조.

54) 『회규』, 제151조.

『회규』는 기존의 『규약』에 비하여 그 항목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⁵⁶⁾ 특히 이후 교역자 제도의 기본 틀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원불교’라는 교명을 선포하면서 『원불교교현』이 제정된다. 원기 33년(1948) 4월 26일 제정된 『교현』에 보면, 제3편 교제(敎制)에서 「전무출신」장과 「거진출진」장이 나란히 자리하게 된다. 제16장 전무출신에 23개 조항, 제17장 거진출진에 13개 조항을 두고 있다. 전무출신에 대해서는 제1절 자격, 제2절 종별, 제3절 절차, 제4절 대우 및 징별로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별 종별의 경우는 2종(鍾)-3기(期)를 두고 있는데, 종별은 지정 요금(급료)를 받는 지 여부에 따라 2종을 두고 있으며, 연한에서는 짐무기간에 따라 1기, 2기, 3기의 연한의 차이를 두고 있다.

7) 「전무출신규정」은 원기 53년(1968) 제정된 이후 원기 89년까지 모두 9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⁵⁷⁾ 이 가운데 원기 53년 제정된 내용과 이후 원기 77년(1992) 전면 개정의 내용, 현재의 규정만을 비교하여 간단히 그 변천의 대체를 살펴보자.

원기 53년 규정은 앞서 밝힌 『회규』와 『교현』에서 제시된 틀을 거의 따르고 있다. 그것이 원기 77년 전면개정을 통해 많은 부분 변화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원기 53년 「전무출신규정」은 총 7장 62개조로 구성된다. 총칙(7), 자격(3), 연한(3), 절차(25)[1절 지원(8), 2절 추천(3), 3절 사가와의 관계(11), 4절 서원(3)], 성적(6), 대우 및 징별(10), 친애(11), 부칙(1)이고 부록으로 서식이 포함되어 있다.

55) 『회규』, 제152조, 제154조 전무출신 권장자 중 10년 이상 1종 또는 2종의 인증을 수한 자는 사후에 전무출신으로 대우함.

56) 『규약』은 본회의 유래, 취지설명, 원칙과 세칙으로 이루어진다. 원칙은 총 6장 22조로 이루어지며, 세칙은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 가운데 제2장 임원에 6개조 정도가 교역자에 대한 규정과 관련되는 것이며, 세칙에서 4장 임원선거규약 1개조, 5장 사무인처리사항 2개조, 6장 상별규약 3개조, 7장 임원명의순서, 14장 연구인출가규약 2개조 등이 더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세칙의 마지막 14장이 출가에 관한 규약으로는 처음이라 할 수 있다.

개정판 『규약』의 경우는 역시 유래, 취지설명, 원칙, 세칙으로 이루어지며, 원칙은 총 9장 29조로 이루어지며, 세칙은 총 12장 75조로 많은 조항이 새로 신설 보완됨을 알 수 있다. 원칙 가운데, 제4장 임원에 10개조가 교역자 규정과 관련되며, 세칙에서 제3장 출가 3개조, 제4장 임원규정 3개조가 더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회규』의 경우 다시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다. 『회규』의 경우 총 12장 250조 달한다. 특히 원불교에서는 생소한 ‘포교’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포교와 관련된 조항만 해도 제2장 교의의 선포 및 의식의 집행에 9개조, 제4장 포교사에 9개조 등 18개조이다. 이 조항 등은 직접 교역자와 관련된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교단의 일관된 흐름과는 다소 이질적인 내용이라 발간 당시의 상황에서 부득이 설정된 내용은 아닌가 한다. 이후 ‘포교사’라는 명칭은 이후 원기 59년(1965) 경까지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포교사자격검정규정」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후 ‘교역자’란 용어에 포괄되고 다시 ‘교무’라는 호칭으로 통일되고 있다. 포교사가 순(회)교무와 같은 역할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무부의 소관사항에 ‘포교 및 교육에 관한 일체 사항’이 포함되고, 교감이 소관 지방의 포교사에 해당한다고 한 점 등에서 그러하다. 이를 제외하고 교역자와 관련된 조항은 제3장 2절 본부와 제3절 지부출장소에 일부 조항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제5장 회원에서 재가회원과 출가회원에 대한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제5장 제2절 출가회원에 128조에서 155조까지 28개 조항을 두어 총칙, 수속, 대우, 전무출신권장자, 제명 등 5개항에 걸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절 거진출진자에 3개항을 두어 별도 규정하고 있다.

57) 「전무출신규정」은 원기 53. 11. 4 제정(교규 제 22호) 이후, 원기 57. 1. 11 개정(교규 제 28호); 원기 68. 2. 22 개정(교규 제 62호); 원기 70. 9. 20 개정(교규 제 70호); 원기 77. 2. 12 전면개정(교규 제 95호); 원기 79. 1. 31 개정(교규 제102호); 원기 82. 7. 31 개정(교규 제130호); 원기 85. 12. 12 개정(교규 제163호); 원기 88. 5. 13 개정(교규 제173호); 원기 89. 11. 8 개정(교규 제180호) 등 9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원기 77년 개정된 규정을 보면, 총 7장 46개조로 구성된다. 원기 72년 4차 개정된 『교헌』 제18조에 의거한 것이다.

제1장 총칙(8개조)[목적, 정의, 정신, 자세, 솔성요론과 계문준수, 품과]

제2장 자격취득(9개조)로 1절 지원(2개조)[지원자격, 구비서류], 2절 심사(4개조)[예비심사, 추천·보증, 중앙심사, 등록], 3절 교육 및 서원(3개조)[교육, 승인, 서원의식]

제3장 복무 및 생활(10개조)[근무처, 인사, 휴역, 자퇴, 정년퇴임, 복제, 생활의무, 금지 및 제한, 친애의 도, 수녀회]

제4장 사가와의 관계(3개조)[사가의 책임, 가족대동, 정토회]

제5장 처우(9개조)[근무성적, 용금·생활지원·급료, 학비보조, 은족결의, 요양과 휴양, 노후정양, 보장, 향례, 후원기관]

제6장 상별 및 성적(5개조)[상별, 직무정지, 사면·복권, 초과분·미달액, 성적]

제7장 보직(2개조)[특별봉사, 시행규칙]

원기 53년(1968)의 규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첫째, 전무출신의 정신과 자세에 대한 규정 추가 및 수정, 둘째 '연한제 폐지'와 '품과제 도입', 셋째, 복무 및 생활 규정 강화, 넷째 용금·생활지원·급료에 따른 전무출신의 구별, 다섯째 특별봉사 규정의 도입 등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

이 중 둘째 품과제 도입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원기 68년(1983) 2차 개정에서 기능직, 봉공직, 행정직, 교육직, 교화직의 5가지 직종을 도입⁵⁸⁾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무', '도무', '덕무'의 품과제로 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두 제도 모두 '능력과 적성에 따라' 혹은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교단의 공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는 같다.⁵⁹⁾ 하지만 품과제의 경우는 그동안 원불교 출가자는 '교무'라고 하는 관념이 정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출가자 내에 교무, 도무, 덕무라는 3가지 호칭이 생기게 되어 단순한 호칭의 혼란이 야기될 뿐 아니라 신분상의 차이가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⁶⁰⁾

58) 제2장 직종 및 자격, 제8조 전무출신에 기능직, 봉공직, 행정직, 교육직, 교화직을 두어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헌하도록 한다. 직종으로서 전무출신의 자격과 대우는 차별하지 않는다.

①기능직은 각종 기능 자격자로서 해당 기능직에 전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봉공직은 중앙총부 각급 기관·교당의 일반직에 전무하는 자를 말한다.

③행정직은 중앙총부 및 각급 기관의 관리에 전무하는 자를 말한다.

④교육직은 각종 전문적인 교육직에 전무하는 자를 말한다.

⑤교화직은 각종 전문적인 교화에 전무하는 자를 말한다. 「전무출신규정」, 원기 68. 2. 22(교규 제62호)

59) 직종별 전무출신 제도의 정착과 관련하여 이성택은 "당시 5종의 직별 중 교화, 교육, 행정은 교무직이라고 한다면, 기능직, 봉공직으로 3대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직종의 정착은 그동안 전무출신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근본적인 구별이 생기는 것"이므로 "동일 이념의 공동체 속에서 생겨나는 위화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면서 "원불교라는 집단이 사회에서 수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다양한 요구를 교무라고 하는 자격과 자질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보고 기능직 전무출신의 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교무직의 자질 향상과도 연결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기능직, 봉공직 양성 교육기관, 교단 참여의 의무와 책임, 권리의 원만한 제도적 장치의 요청, 퇴직이나 사후의 예우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단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성택, 「전무출신제도의 전망과 과제」,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보』 29호, 1988, p. 14 참조. 이 글은 제8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 발표요지를 실은 것이다.

60) 원불교 교역자 호칭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정천경은 4가지 문제점을 정리하고 있는데, 1. 출가교역자의 호칭이 너무 많아 통일이 되지 않은 점, 2. 출가교역자 호칭이 너무 관료적이고

넷째의 경우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3가지 구별을 둔 것이다.⁶¹⁾

다섯째 특별봉사의 경우는 재가교도가 일정기간 전무출신에 준하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준 규정이라 이 또한 출가와 재가를 잇는 통로를 열어 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후에도 5차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품과전환’에 대한 규정과 급여에 대한 규정⁶²⁾ 등이 보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무출신 관련 규정들도 많이 정비되고 있다. 규정 내용에 따라 구분해 보면, 자격과 관련하여 품과(‘전무출신품과별자격규정’, ‘전무출신품과별자격전형규정’), 지원(‘전무출신지원자심사규칙’), 교육(‘예비전무출신교육에 관한 규칙’, ‘5급교무자격검정규정’, ‘5급교무자격검정시행규칙’, ‘전무출신역량개발교육규정’), 훈련(‘전무출신훈련시행규칙’), 복무 및 생활에서 인사(‘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 생활·복제(‘도량생활규정’, ‘교복과 법락에 관한 규정’), 사가생활과 관계에서 정토회(‘정토회규정’), 처우와 관련해서 휴무(‘전무출신휴무에 관한 규칙’), 요양·휴양·정양(‘전무출신요양규칙’, ‘전무출신정양규칙’, ‘원불교수도원규칙’), 은족결의(‘은족규정’), 급여·후생현금(‘전무출신급여 및 후생현금시행에 관한 규칙’), 후원기관(‘전무출신후원공단규칙’), 상별 및 성적에서 상별(‘징계규정’, ‘사면복권에 관한 규정’), 사업성적(‘교도사업성적사정규정’), 그리고 시행규칙(‘전무출신시행규칙’)까지 ‘전무출신규정’과 관련된 총 23개 세부 규정이 있다.

여기에 전무출신 관련 규정으로 ‘정남·정녀규정’, ‘정남·정녀규정 시행규칙’, ‘정화단규정’, ‘출가교화단규정’, ‘교역자대회규정’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3. 재가교역자 제도의 형성과 변천 과정

1) 종교가에서 재가자의 경우 대체로 보조자, 후원자의 역할을 많이 맡아왔고 교역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아직 생소하다. 하지만 재가 교단으로 성공한 종교단체가 없지 않고 또한 대종사의 본래 취지와 회상 창립의 초기에 재가자들이 중요한 역할과 성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재가교역자가 교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원불교 교화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교단이 역사를 거듭해 오는 동안 출가 중심의 교단운영으로 인하여 재가출가의 균형은 자연 출가 본위로 진행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규정에 있어서

세속적인 면이 강해 종교적 특징이 없다는 점, 3. 출가교역자의 품과별 호칭과 직급별 호칭에 따른 혼선 문제, 4. 재가교역자는 호칭이 없고 직함만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정천경, 「원불교 교역자 호칭에 대한 고찰」, 신룡교학회 제31차 학술발표회 자료집 「원불교 용어·호칭에 대한 재조명」, 신룡교학회, 1996. pp. 23-24.

61) 제1장 총칙, 제7조(구별) ①전무출신은 교단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별을 두어 문호를 열어갈 수 있다.
1. 용금을 받는 자, 2. 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3. 급료를 받는 자. 「전무출신규정」, 원기 77. 2. 12(교 규 제95호).

62) 규정의 조목 명칭도 ‘용금·생활지원금·급료’의 조목이 ‘급여’로, ‘초과분·미달액’의 조목은 ‘후생현금’으로 각각 변하고 있다.

도 전무출신 관련 규정은 교단의 역사 속에 세밀하게 다듬어져 온 것에 비하면 재가교역자 규정은 그 숫자도 「거진출진규정」, 「원무규정」, 「재가교역자인사임면규정」 등이 전부이며 규정의 양도 2쪽을 넘지 않아 매우 소략한 형편이다. 관련 규정으로 「교당교화단규정」, 「교도사업성적사정규정」, 「교역자대회규정」 등이 있지만 직접적인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규정의 빈약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단에서 재가교역자에 대해 주목하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으며 여전히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2) 재가교역자 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볼 때, 출가교역자와 구분되기 이전에는 주객이 없이 그야말로 혼연일체로 함께 했다는 점이다. 그 출발도 출가교역자 제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영산 시절과 변산 시절에 ‘전무노력자’ 혹은 ‘전무주력자’의 경우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여 칭한 것이 아니며, 그 공로자를 치하하는 최상의 표현으로 ‘전무(專務)’라는 수식을 사용한 것일 뿐이다. 재가 중에 많은 전무노력자와 전무주력자, 그리고 후원인으로 회상 창립에 일조하고 있으며, 초창 여성 선진 대부분도 재가자의 신분으로 교역에 성공적 자취를 남기고 있다.

재가는 출가의 상대 개념이지만 그것이 초창기부터 신분의 차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으며, 재가출가공부인의 처소로 ‘재가공부’는 주로 세간 생활이요, ‘출가공부’는 출세간 공부이라 이 세간과 출세간을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로 교강(敎綱) 잡아주신 본의에 따른 것 이었다. 그러다가 회상 창립이 본격화되면서 사가와 고향을 떠나 공도에 오롯이 힘쓸 것을 서원한 ‘전무출신’이 나오게 되면서 ‘출가자’, ‘출가회원’이라는 신분상 영역이 생기게 된다. 이들이 자기 공부 준비와 함께 다른 이들의 공부를 위해 사업계의 일각에서 ‘임원’의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 당시 임원은 출가만이 아니라 재가임원도 있었다. 다만 대체로 부장과 간사 등은 출가회원이 맡아 주로 직무를 분담하고 있다.

원기 13년(1928) 이후 교무, 순(회)교무 등이 임원 명단에 등장하는데, 이는 부장, 주무, 간사 등과 같이 총부와 지부출장소 등에서 활동했던 임원의 일원이었다.⁶³⁾ 교무가 지금과 같이 출가자의 대명사처럼 쓰이기 이전에 ‘재가교무’가 있었는데, 그 실례가 바로 이공주 종사이다. 당시 경성출장소 이춘풍 교무가 병환으로 시무를 못하게 되자 부득이 원기 14년 (1929) 이공주가 경성출장소 예회 및 시무를 전담하게 되고 이를 원기 15년(1930) 4월 23 일(음 3월 25일) 열린 제8회 평의회에서 결의하여 이공주가 정식 경성교무로 발령을 받게 된다. 이는 출가교무가 아닌 재가가 교무로 임명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⁶⁴⁾

교무라는 호칭이 원래 출가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기 이전에는 재가자가 교무가 되는데 어떠한 제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후 교무라는 호칭이 원불교 출가자의 통칭으로 사용되고 이후 부득이 ‘재가교무’라는 호칭이 일시 등장하게 된다.

그것이 원기 34년(1949) 「거진출진규정」에 나타나고 있다.⁶⁵⁾ 이 규정은 해방후 ‘원불교’

63) 임원이므로 그 임기가 있는 것이다. 개정판 『규약』에 따르면, 교무와 순교무의 경우는 부장과 같이 3년 임기였고, 주무와 간사는 2년 임기이다. 그것은 순환제와는 다른 것은 교무를 맡다가 부장이 되기도 하고 부장을 하다가 교무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다. 현재와 같이 한 번 교무가 되면 (출가자로서) 교유한 신분을 얻게 되어 평생 교무와 같은 개념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재가교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같은 논리로 재가라 할지라도 당시 모든 임원을 맡는 데는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64) 「제8회 평의회회록」, 『원불교교고총간』 6권, p. 189. 같은 날 조송광은 김제(원평) 교무로 임명된다.

의 교명을 선포하면서 함께 제정된 『원불교교헌』(원기34. 4. 26) ‘제17장 거진출진’에 바탕한 것이다. 특히 규정의 2조에서 거진출진의 자격에 대한 『교헌』 제163조 제3항의 특별의무에 관한 내역으로 “1. 봉불(법신불 봉안한 것), 2. 예회(정례법회에 연중 반수이상 출석한 것), 3. 지계(계문에 특별한 범과가 없는 것), 4. 예전(모든 의식을 예전에 의하여 실행한 것), 5. 보은미(총부와 당지부의 유지를 위하여 보은미를 봉납한 것)”을 밝히고 “단 신성은 충실하나 가정상 자유가 없어서 이상 의무를 다 실행하지 못한 자는 소관(所管) 교무의 심산(心算)으로써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제3조에서는 재가입원에 대한 내역을 소개하는데, “1. 지부장, 2. 지소장, 3. 주무, 4. 재가교감, 5. 재가교무, 6. 재가순교” 등이다. 계속해서 제4조에서 “지부장, 지소장, 주무는 교헌의 정한 바에 의하며 재가교감, 재가교무, 재가 순교는 형편상 전무출신은 못하나 선원과 학림에 다년간 훈련을 받아 능히 교화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재가 중 보조임무를 명하여 힘 미치는 대로 교화에 협력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6조에서는 “거진출진 자격 제5항 전무출신보호에 관한 것은 전무출신 주력보호자에 한다.” 제7조에서는 “거진출진자격 제6항 의무노력에 관한 것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시일을 1종 전무출신과 동례(同例)근무한 자로 한다. 단 처음은 전무출신 서원을 아니하였을지라도 실근무가 7년 이상이 되면 전무출신에 입격한다.” 제8조에서는 “거진출진자격 제7항 ‘적당한 인재학비담당에 관한 것’은 교종 공천에 의한 인재에 한하며 또는 인재의 지명은 아니하나 당시 공비생 1인분의 지정학비를 담당한 자로 한다. 단 2인 이상의 학비를 담당한 자는 만5년에 거진출진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거진출진의 자격에 대하여 상세히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원기 66년(1981) 제정(?)된 「거진출진규정」에서는 거진출진의 자격을 다만 “재가교도로서 공부와 사업이 출중하여 원성적 준5등 이상인 자로 그 공덕이 항상 드러나는 이”⁶⁵⁾라고만 할 뿐이다. 원기 69년(1984)의 「재가교역자인사임면규정」에 “재가교역자란 재가교도로서 재가교무 및 임원으로 본교 교역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고 있으므로 그 종별에서 “재가교무와 교도회장, 부회장, 주무, 단장, 중앙, 순교 등을 둔다”고 소개하고 있다.⁶⁷⁾ 그러나 원기 80년(1995) 개정된 「재가교역자인사임면규정」에는 ‘재가교무’가 ‘원무(圓務)’로 대치된다.

한편 「원무규정」으로 원기 81년(1996) 제정⁶⁸⁾되는 데, 부칙에서 “‘재가교무규정’은 폐지한다고 하고 있어 이 때 원불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재가교무’라는 용어는 사라지게 되는 것

65) 다만 이 규정이 정식 규정으로 통과되어 효력을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다. 현 「거진출진규정」은 원기 66년에 제정된 것으로 나와 있다.

66) 「거진출진규정」, 원기 66. 8. 13 제정(교규 제56호)

67) 「재가교역자인사임면규정」, 원기 69. 9. 18(교규 제66호)

68) 「원무규정」, 원기 85. 10. 31(교규 제160) “제5조(자격) 원무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연령 30세 이상으로 심신과 서원이 확고한 자.
2. 법립 10년 이상, 법계 교선 이상으로 인품과 덕망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교리 해석에 큰 과오가 없고 남다른 공심으로 교화 활동에 참여코자 하는 자.
4. 재가 교역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전령위원 전원의 합의로 종법사의 재가를 얻은 자는 전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다.

이렇게 199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재가교무’가 사라지게 된 것은 이미 정착되어 통용된 교무의 용례가 출가자의 신분을 대표하는 용어로 인식된 상태이므로 재가자를 위한 용어가 새롭게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가교역자(기존의 재가교무)를 대신할 호칭으로 ‘원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결국엔 재가자가 교역의 주체로 나설 때 출가자와 동등한 호칭으로 나설 수는 없게 되었다. 물론 법사라든지 법위나 법계에 따른 호칭으로 볼 때는 통용의 길이 있을 수 있으나 교역을 동등한 입장에서 담당하고자 한다면 ‘원무’의 역량이 교회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는 도무와 덕무처럼 같은 출가 전무출신이지만 서로의 직능별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원무는 다만 재가자라는 신분상 차이가 있을 뿐 많은 부분 기존 교무가 담당했던 영역과 겹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⁶⁹⁾

3) 한편 ‘거진출진(居塵出塵)’이라는 용어는 출가회원에게 ‘전무출신’이라는 호칭을 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재가회원에 대한 적절한 용어가 필요했을 것이고, 이를 ‘거진출진’이라고 부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불법연구회 초기 조단 과정에서 ‘전무출신실행단’과 ‘기성단’과 함께 ‘거진출진단’을 둔 것에서 보면 늦어도 원기 13년(1928) 경에는 교단내에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⁷⁰⁾ 당시에 출가·재가의 개념이 공부인의 처소 개념으로 쓰이는 등 혼용되고 있었던 점에 비하여 ‘전무출신’이란 용어처럼 ‘거진출진’은 일종의 재가 전무출신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통단’과는 구분되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회상에 공적이 드러난 자로서 그 공부와 사업에 의해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거진출진’이 규정으로 처음 공식화된 것은 『회규』에 와서이다. 『회규』의 경우 제5장 회원에서 재가회원과 출가회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절 출가회원에 128조에서 155조까지 28개 조항을 두어 총칙, 수속, 대우, 전무출신권장자, 제명 등 5개항에 걸쳐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제3절 ‘거진출진자’에 3개항을 두어 별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진출진자’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56조 재가 회원으로써 진세의 향락을 끈고 오직 본회의 공부와 사업에 띄울 가진 자를 거진출진자라 칭함.

69) 예를 들어 교당에 교무가 발령될 수 없을 때, 원무가 교무가 했던 모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록 (재가)교무란 호칭은 쓰지 않더라도 재가 신분으로 경성지부 교무의 역할을 했던 이공주 종사의 사례가 많이 참고될 것이라 생각된다.

70) 농업부창립과 인재양성소창립의 사업가담표에 보면 인재양성소창립에 연합으로 가담한 단을 보면 전무출신1회실행단, 전무출신5회실행단, 거진출진제1회단 등 모두 3개단 27명이다. 『월말통신』제4호, 사업가담표, 『원불교자료총서』제1권, 원불교출판사, 1984, pp. 113-114. 한편 원기 13년 3월에 열린 제1회 기념총회에서 창립유공인의 기념촬영이 있었는데, 이 때 기사를 보면 “사업 일등 유공인 : 이청춘 이동진화 김광선 서중안 전삼삼, 10년 이상 전무출신자 : 김기천 송규, 5년 이상 전무출신자 : 송만경 송도성 이준경 이춘풍 김광선 김삼매화 조갑종 이동안 전음광, 재가회원 중 1등 전무주력자 : 이형국 김남천 오창건 이재철 이공주 구남수 장적조 이만갑 박사시화 최도화, 재가회원 중 2등 전무주력자 : 이호춘 문정규 박원식 조송광 정삼보화 이성각 최상우 심오운 민자연화 김정각 김낙원 노덕송우 이철우 정세월 이현공 이정원 박해원우 송월수 이강연화 권동화 박공명선, …(중략)… 단 이원화는 재가 전무주력 1등 자격에 해당하나 당시 총회에 불참하였음으로 사전에 결원되였으며 …(후략)….” 『창건사』, 『회보』 49호, 『원불교자료총서』제IX권, 원불교출판사.

제157조 거진출진자는 공부와 사업에 대한 정도가 전무출신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으나 형편에 의하여 본회로부터 직접 직무 임명의 책임이 무한 자로 함.

제158조 거진출진자는 다년간 경력으로써 좌의 5항이 충실하여야 소호도 흡이 없는 자는 1종이요, 그 다음은 우열을 따라 2종 3종 4종 5종으로 정함.

1. 호의호식을 불고하고 혐의악식을 한다 할지라도 이 공부이 사업을 영구히 계속 하는 자.
2. 재색의 락을 불고하고 담박한 생활을 할지라도 이 공부 이 사업을 영구히 계속 하는 자.
3. 명예와 권위를 불고하고 이 공부 이 사업을 영구히 계속 하는 자.
4. 안일을 불고하고 육신과 정신에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본회 규칙 생활을 영구히 계속 하는 자.
5. 공부계와 사업계에 항상 성심으로 조력하야 래왕간에 공덕이 많이 들어나는 자.⁷¹⁾

이것이 『원불교교현』이 새롭게 제정되어 자격에 대한 내용을 계승하면서 다소 추상적인 자격 조항을 공부와 사업의 연한과 성적 등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제1절 자격

제162조 재가교도로서 공부와 사업에 출중한 자를 거진출진이라 한다.

제163조 거진출진은 좌의 조항으로써 그 자격을 인증한다.

1. 10년 이상을 대조하여 세간에 많은 고락과 도문에 많은 고락을 경과하되 도심이 여일하여 그 환경에 끌리지 아니한 자.
2. 10년 이상을 대조하여 선원과 강습에 연중 누석(漏席)이 없고 예회성적이 여일한 자.
3. 총부지부를 물론하고 10년 이상의 특별의무를 잘 지킨 자.
4. 재가입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공로가 있는 자.
5. 10년 이상 전무출신을 보호하여 권장이 있게 한 자.
6. 3년 이상과 7년 이하의 의무노력이 있는 자.
7. 전무출신에 공헌하기 위하여 적당한 인재의 학비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8. 특신급 이상의 법계와 5등 이상의 사업성적이 있는 자. 단, 이상 각 항중 1건에만 해당하여도 거진출진으로 인증한다.⁷²⁾

특히 원기 34년 제정 『교현』에서는 자격뿐만 아니라 대우 및 징벌 등을 13개 조항으로 충설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5차에 걸친 『교현』 개정 과정에서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이 하나의 조항으로만 언급될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규정으로 이관되게 된다. 「전무출신규정」이 일찍부터 발전되고 연구되어 온 것에 비하여 거진출진에 대한 세부규정은 답보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III. 나가며

이상 출가재가 교역자 제도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대략 살펴보았다. 하지만 상세히 다루지

71) 『회규』, 원기 27년.

72) 『원불교교현』, 원기 33년 4월 26일.

못한 많은 부분이 없지 않다. 다만 본 연구가 보다 나은 연구 촉발의 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일부 진행된 연구 내용에 대한 소개와 필자의 한계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만을 간단리 정리하여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1) 원불교 교역자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규약』, 『회규』, 『교현』을 중심으로 한 각종 법규와 관련된 초기교서와 각종 회의록, 사업보고서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다. 특히 교역자 제도에 대한 논의는 『교현』이 발표된 이후 각종 법규가 정비되면서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후의 수위단회, 교정위원회 등의 각종 회의록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무출신을 비롯한 재가출가 교역자 제도에 대한 논의는 1994년 이후 최근 15년 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다. 이러한 논의는 수위단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자료집으로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총무위원회의 '세대교역자 제도'에 대한 연구⁷³⁾가 시작에 있어 눈에 띈다. 같은 해 기준 「전무출신제도와 관련된 자료모음」⁷⁴⁾을 통해 초기교서로부터 전무출신제도의 기초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는 1996년에 「전무출신 제도분야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김경일의 「세대교화 제도의 가능성」, 이명희의 「정남정녀제도의 이념 정립 및 대책」, 성도학의 「결혼한 전무출신의 가정윤리(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⁷⁵⁾ 계속해서 1997년에 「재가교도의 교화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재가교역자에 교화참여와 훈련(양성) 과정에 대한 논의,⁷⁶⁾ 권도갑(2000)의 정토회원의 교역자화에 대한 논의,⁷⁷⁾ 그리고 백인혁(2004)의 재가교역자 양성과 보수교육에 대한 논의⁷⁸⁾ 등이 진행되면서 재가교역자의 교화

73) 전문위원회연구모음집 총무위원회(김주원·황인철·배심덕·성명종·조학심·이정택·최지원) 편, 「II. 세대교역자 제도」, 『분석과 전망』 2호, 수위단회사무처, 1994, 4월.

74) 수위단회사무처, 「전무출신제도 관련 자료모음」, 『분석과 전망』 제9호, 수위단회사무처, 1994, 7월. 이 자료는 세 부분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I. 전무출신 규정의 연원」에서 『규약』(원기 12, 19), 『회규』(원기 26-33), 『원불교 내규』(원기 34년)를 「II. 전무출신 제도 관련 결의 내용과 토의 요약」에서는 원기 55년 제39회 임시수위단회의 내용이후 원기 77년 제3대 20회 임시수위단회의 회의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회의기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목차만 소개하자면, 전무출신 처우 통일에 관한 것(55.12.4), 전무출신 용금 통일에 관한 것(56.2.2), 전무출신 정신의 지도방안 수립의 건(56.3.7), 전무출신의 사회적 겸직에 관한 것(56.3.7), 전무출신 규정 제45조 해석의 건(56.3.27), 전무출신 처우 및 후원대책의 건(64.10.15), 교역자 제도상 문제점 토의 요약(65.6.17), 전무출신 종별토의 요약(76.2.20), 전무출신 규정 개정토의 요약(76.6.29), 전무출신 규정 심의토의 요약(76.9.20), 전무출신 규정 개정심의 토의 요약(76.11.9), 전무출신 규정 개정심의 토의 요약(77.9.3) 등으로 원기 60년대 까지 산발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원기 76-77년에는 「전무출신규정」의 전면개정(원기 77.2.12)에 즈음하여 활발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부분은 「III. 전무출신규정」에서 개정된 규정을 모아두고 있다.

75) 수위단회사무처, 「전무출신 제도분야에 대한 연구」, 『분석과 전망』 14호, 수위단회사무처. 김경일, 「I. 세대교화 제도의 가능성」, 이명희, 「II. 정남정녀제도의 이념 정립 및 대책」, 성도학, 「III. 결혼한 전무출신의 가정윤리(初)」, 1996.

76) 수위단회사무처, 「재가교도의 교화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 『분석과 전망』 19호, 수위단회사무처. 장도영, 「I. 재가교도를 현장교화의 주역으로」, 안인석, 「교당관리에 관한 연구」, 박인해, 「III. 재가 교역자 훈련 과정」, 1997.

77) 권도갑, 「정토회원의 교역자화에 관한 소고」, 「원기83년도 후반기 연구발표」, 『분석과 전망』 22호, 수위단회사무처, 2000. 같은 해 후반기에는 최경도, 「전무출신의 사가생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남자전무출신을 중심으로-」, 「원기84년도 전반기 연구발표」, 『분석과 전망』 23호, 수위단회사무처, 2000가 있어 당시 전무출신 사가생활의 문제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맞물려 정토회원이 교역자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교화참여와 경제적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78) 백인혁, 「재가교역자 양성과 보수교육에 대하여」, 『분석과 전망』 30호, 수위단회사무처, 2004.

참여 방안과 교육훈련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총무법제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공동연구(2005)로 「전무출신 제도 개선방안 연구」이 제안되기에 이른다.⁷⁹⁾ 이후 장오성(2005)의 「여성교역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⁸⁰⁾, 최정안(2006)의 「재가를 활용한 교도훈련 및 교화활동보고서」⁸¹⁾, 총무법제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공동연구(2006)로 「원기100년을 향한 재가교역자 제도 개선 방안」⁸²⁾ 등이 모색되었다.

이러한 수위단회를 중심으로 한 교역자 제도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교단 내부의 논의에 그치고 있어 아직 공론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 밖에 일부 학술지 논문⁸³⁾ 및 학위논문이 제출되고 있으며, 학술대회⁸⁴⁾ 등에서 일부 공개적인 논의가 되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연구는 여전히 미비하다.

현재까지 원불교 교역자와 관련된 학위논문이 23편(박사2, 석사21)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재가교역자에 대한 내용 2편⁸⁵⁾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가교역자, 특히 교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개별 영역에 대한 연구로는 출가교역자와 관련된 논문 중 남녀 평등사상과 관련된 논문이 5편으로 이들은 여성교역자의 활동에 주목하면서도 평등사상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제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⁸⁶⁾ 이 가운데 장신자(1998)

79) 총무법제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공동연구), 「전무출신 제도 개선방안 연구」, 『분석과 전망』 31호, 수위단사무처, 2005.

80) 장오성, 「여성교역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과 전망』 31호, 수위단사무처, 2005.

81) 최정안, 「재가를 활용한 교도훈련 및 교화활동보고서」, 『분석과 전망』 32호, 수위단사무처, 2006.

82) 총무법제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공동연구), 「원기100년을 향한 재가교역자 제도 개선방안」, 『분석과 전망』 32호, 수위단사무처, 2006.

83) 안훈, 「교당조직체계를 통한 재가교역자활용방안-교화단조직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 21집, 원불교사상 연구원, 1997. 이외에 교역자와 관련된 논문이 수 편 제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교무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것도 복지와 교육(예비교무 교육포함) 등에 편중되어 있다.

84)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전무출신의 제조명」, 제8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회의 자료집, 1979. 교단 제3대를 준비하면서 전무출신 정신과 이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전무출신 제도에 대한 논의는 성도종의 「타종교 성직제도와 전무출신제도의 비교」와 이성택의 「전무출신제도의 전망과 과제」에서 일부 진행된다. 성도종은 기독교, 가톨릭, 불교의 성직제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무출신제도의 전통적인 특징은 “남녀의 동등한 자격과 대우, 결혼생활과 독신의 자유 선택, 무보수 봉사와 의식용금의 공가 수용, 중앙인사기관의 절대적 권위 등”으로 보고, “과거 종교의 역사에서 독신과 결혼생활을 동시에 동일한 틀에서 수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이 문제로 교단을 분립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문제의 고리가 결정됨에 따라서 이하의 모든 문제가 합리적으로 구분되어 모순과 갈등이 없도록 수용하는 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여타의 많은 사항들이 부수적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이성택은 전무출신의 공동생활 문제의 제조명과 전무출신의 이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무보수 봉공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직종별 전무출신 제도로 기능적·봉공적 전무출신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논의로는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원불교 교무상의 다각적인 모색」, 제22회 원불교사상연구학술대회 자료집, 2003가 있다. 이 학술대회는 교단100년을 앞두고 기획된 것으로 최영돈(회공)의 「결복기 교운을 열어 갈 교무상」, 최상태(성훈)의 「원불교 교무상의 시대적 모색」, 김길호(덕권)의 「원불교 교무상의 다각적인 모색」 등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무상에 대한 제안이 주를 이룬다. 이 내용은 이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8집 (2004)에 재수록되고 있다. 이외에도 김성장(성훈)의 「21세기 사회복지 시대의 교무상」, 류성태의 「지식정보 사회와 교역자상」, 정현주(천경)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교무상」, 박희종(덕희)의 「교화성장을 위한 교무의 리더쉽 연구」, 강철진(성경)의 「상장례의식 집례자로서의 교무상」 등이 발표되었다. 특히 장하열(연광)의 「교무(教務)의 개념화 과정에 관한 연구」는 교무, 교역자, 전무출신을 비롯하여 재가교역자에 이르기까지 제도 변천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85) 金成容, 『圓佛教 在家教徒의 役割에 關한 研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朴惠晟, 『재가교화단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86) 朱春輝, 『圓佛教의 平等教育思想 研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金映禮, 『圓佛教 平等思想에 關한 研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는 정녀제도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교역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논문⁸⁷⁾ 등이 여러 편 제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천지연(1999)이 기혼 남자교역자의 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교육훈련,⁸⁸⁾ 예비교역자의 만족도,⁸⁹⁾ 교역자의 기능⁹⁰⁾, 조직 혼신의 형성요인⁹¹⁾ 및 자아정체성에 대한 연구⁹²⁾, 그리고 교도들의 교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⁹³⁾ 등이 진행되었다.

좀 더 포괄적인 연구는 김선명(1998)의 초기 교역자 집단에 대한 연구와 장하열의 교무상⁹⁴⁾에 대한 접근이 있다. 특히 김선명은 원불교의 초기 모습이 재가출가와 기혼미혼, 남녀, 노소,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 동참하고 있었음을 여러 지표를 통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⁹⁵⁾

이상 크게 남녀평등과 관련하여 여성교역자 제도와 교역자 복지제도 등에 연구가 많은 것은 원불교 여성교역자들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했던 점, 그리고 교역자 제도에 있어서 원불교가 복지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크게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 대한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그 제도적 한계와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일부 제기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문제제기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아마도 교역자 제도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여전히 원불교 교역자 사회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못하고 여전히 집단에 대한 개별 평가가 교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그 내용이나 성격상 구체적인 대안을 이끌어 내는 것은 결국 교단 수위단회를 비롯한 내부 구성원의 합의와 결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기한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전문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2) 다음은 지면관계상, 그리고 필자의 능력의 한계로 다루지 못한 내용 중 몇 가지만은 언

구훈모, 「원불교 여성교역자의 활동에 관한 연구-남녀평등 사상의 실천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민현주, 「원불교 남녀평등사상과 실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4.

이정애(혜선), 『원불교의 여성관과 현실의 성불평등 연구』,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장신자(오성), 「원불교 '정녀(貞女)제도'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87) 安真姬, 『圓佛教 教務의 福祉意識에 關한 研究』, 中央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千知研, 『圓佛教 既婚 男子 教役者の 生活保障制度에 대한 滿足度』,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裴玄貞, 『원불교 교역자의 노후복지 대책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金彥河, 『원불교 교역자의 노후복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朴泰弘, 『원불교와 천주교 성직자의 노후복지제도 비교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88) 成道鐘, 『宗教團體 教役者の 教育訓練에 關한 研究 -圓佛教 教役者の 教育訓練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89) 金賢愛, 『圓佛教豫備教役者の 自我概念과 歸因性向에 關한 研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정명하, 『원불교 예비 성직자의 진로결정 요인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90) 蔣來日, 『圓佛教 教役者の 機能에 關한 研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91) 金龍完, 『組織코미트멘트 形成要因에 關한 研究 -圓佛教 教役者를 對象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92) 吳材信, 『圓佛教 教役者の 自我正體感 發達에 대한 研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93) 朱閨姬, 『원불교 교도들이 인식하는 교무상』, 圓光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5.

94) 장하열, 『원불교 교무관의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1992.

_____ 「원불교의 교무론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95) 김선명, 「원불교 초기교역자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1998.

급해두고자 한다.

그 가운데 정남·정녀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전무출신제도 전반의 틀을 고려해볼 때 무척 중요한 문제이다. 그 핵심은 기혼 여자전무출신과 관련된다. 이 부분은 교단사 전반에 걸쳐 미묘하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쉽게 다루기 어려운 가장 까다로운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기혼 여자 교역의 문호가 어느 정도까지 개선될 수 있을지,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기혼자에게 여자도무의 경우도 그 문호가 막혀있는데 이 문제는 개선될 수 없는지, 정토회원의 교역 참여의 경우 그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더 나아가 세대전무출신 제도의 도입은 가능한 것인지, 재가교역자 중 원무가 활성화되면 교화현장이 일부 원무로 대체될 것인데, 상대적으로 커질 여자 원무와 기존 교무 사이에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등의 문제들과 직접 연결된다.

다른 하나는 전무출신의 공동생활 문제이다. 물론 초기교단의 공동생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공동생활의 문제는 경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초기에 전무출신의 공동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예비 교역자로서 지원부터 노후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복지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일정부분 전무출신 스스로 해결해야 할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혼 생활과 사가와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직업 생활(모든 경제활동까지 포함) 등에 이르기까지 걸쳐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현재 용금, 용금+생활지원금, 급료의 3종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고 후생현금을 통해 큰 틀의 공동체를 위한 부의 분배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의 회복에 있다고 본다.

원불교 교역자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한마디로 분리의 역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처음엔 출가와 재가조차도 미분화된 혼연일체의 공동체였다. 그야말로 십인일단(十人一團)이 되고 일심합력(一心合力)의 모습에서 출발한다. 이후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으로 나뉘고, 전무출신 내에서 기혼자의 사가생활의 영역이 별도로 분리된다. 여성기혼자의 영역도 또한 분리된다. 전무출신 내에서 교화직, 기능직, 봉공직이 품과가 이후 분리되고 있다.

그 외에 각종 기관이 별립되고 다양한 분야가 생기면서 경제적인 입장에 있어서 종별의 분리가 없을 수 없다. 그 외에 각종 자격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학력과 연령 등 의 제한이 따르게 된다. 교역자의 문호가 갈수록 좁아든 셈이다. 그 과정에서 남은 것은 출가요 교무요 정녀다. 그것은 당연하게도 교단 역사를 이끌어 온 뜻이 바로 출가의 뜻이었고 교무의 뜻이었고 정녀의 뜻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출가 위주의 교단에서 출가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교단 전반에 위기감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출가지원자 감소는 교단 교역자 제도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소외되었던 영역에 대한 애정 어린

접근이 요구된다. 재가를 교역의 주체로 세우자는 것은 현실에서 부족한 교화 인력의 빈 자리를 채우려는 아쉬운 고육지책이 아니다. 원래 함께 했던 고유의 자랑스런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다. 분리되었던 사가생활 영역도 최대한 교단에서 다시 끌어 안아야 한다.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큰 품에서는 교단이 끌어 안아주어야 한다. 우리 가족, 우리 아들·딸, 우리 형제·자매, 우리 부모의 문제로 살펴가야 한다.

대가족 제도가 산업화의 물결 속에 핵가족화되면서 대부분의 가족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대가족 제도에서 시작된 교단이 핵가족의 시대를 거치면서 분열되어 왔다. 이제 다시 극복해야 할 때다. 결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1사람인 핵가족 제도에서나 생기는 문제이다. 대가족에서는 결손이란 없다. 핵가족은 그만큼 아버지·어머니의 공백이 크게 작용한다. 가정에서 아버지·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투자해야 할 시간과 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임에 틀림없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공동가족’이다. 대가족이 혈연 중심이라면 공동가족은 법연(法緣) 중심 공동체이다. 많은 아버지와 많은 어머니, 많은 형제자매, 많은 자녀가 생기는 것이다. 아마도 그 모델의 원형은 원불교 초기 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